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69
----------	-----

2021. 7. 20.(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1년 6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7월 9일

-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에 대한 인용 조항 오기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조항의 오기 사항 정정(안 제8조)

- 제6조제1호 각 목 → 제6조 각 호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상위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상위 법령에 따라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제6조제1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제2호(공동주택) 및 제3호(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를 모두 포함하였어야 했으나 인용 조항의 오기로 제2호와 제3호가 누락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함.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에 대한 인용 조항 오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9
----------	-----

제출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에 대한 인용 조항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항 오기사항 정정(제8조제1항)
 - 제6조제1호 각 목 → 제6조 각 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호 각 목”을 “제6조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제6조제1호 각 목 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제6조 각 호 ----- ----- ----- -----

관계 법령 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6조(충전시설 설치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8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제6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
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
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
하여 계산한다.